



#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01

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
농지 중 **실제 경작하는  
농지만 신청하기**



02

경작중인 농지 중  
**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 
신청하지 않기**

\* 폐경 면적 신청 시 직불금 총액의 10% 감액됩니다.



03

임차한 농지는  
**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 
공익직불금 신청하기**

\* '20년 임대차 계약서 대신 '확인서'를 제출하신 경우  
'21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04

공익직불금 신청 전  
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 
**14일 이내 변경하기**

\*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
**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**는 신청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, **농업경영체 변경**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(1644-8778), 인터넷([www.agrix.go.kr](http://www.agrix.go.kr))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

#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

##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

-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  
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(일부위탁 포함)하는 농지  
\* 일부위탁: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,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
- 임차한 농지(임대차 계약서 첨부)  
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



##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

- 본인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
-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농지
- 폐경 농지  
건축물, 주차장, 콘크리트 도로, 묘지 등으로 영농행위 불가능 농지



## 직불수령자 정보공개

- 장소: 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
- 공개내용: 성명, 농지 등의 지번, 등록면적, 직불금 종류, 수령금액



## 부정신청·수령자 신고

- 접수기관: 콜센터(1644-8778), 읍·면·동 사무소, 농관원 지원·사무소
- 포상금 지급: 최소 지급금액 50만원



## 직불금을 부정신청·수령한 경우

- 예)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 
부정수급 농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, 부정수급 수령액의 5배 제재부가금이 징수되고 향후 5~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「경작사실확인서」를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 
\* 형사처벌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##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

- 집합교육: 읍·면·동별 연 2시간(코로나19를 감안하여 추후 안내)
- 온라인교육: 농업교육포털(www.agriedu.net)에서 「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」 수강  
\* 교육이수 인정기간은 2020.10.1.~2021.9.30.입니다.

※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(www.mafra.go.kr/gong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